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10. 25 선고 2022가단11335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문우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2. 10. 4.

판 결 선 고 2022. 10. 25.

주 문

1. 피고와 소외 D(주민등록번호 1 생략)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0. 6. 10.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소외 D에게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, 소외 E(주민등록번호 2 생략)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.
2. 적용법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 판결)

판사 이관용

목 록

채권의 표시

[] ([])이 경북 고령군 [], [] 소재 부동산을 []
[] ([])에게 매매대금 18억원에 매도하고 16억5천만원을 지급받음에
따라 위 []이 위 []에 대하여 가지는 150,000,000원의 매매대금청구채권,
끝.

청 구 원 인

1. 당사자들의 관계

원고들은 소의 D에 대한 채권자들이고, 피고는 2020. 6. 10. 위 D와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(이하 '이 사건 채권양도계약'라고 합니다)을 체결한 채권양수인입니다.

2. 피보전채권 : 원고들의 소의 D에 대한 채권

원고들은 소의 D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 200383 손해배상(기)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들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, 따라서 원고들은 위 판결에 따라 위 D에 대하여 각 31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18. 1. 3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에 의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(갑제 1호증 판결문).

그런데 위 D은 원고들에게 위 판결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습니다.

3. 사해행위 :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

가. 위 D의 소유재산은 경북 고령군 F, G소재 부동산이 전부인데, D은 위 부동산을 소의 E에게 매도하여 2020. 6. 10. 당시(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) D의 재산은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잔금 1억5,000만원이 전 재산이었습니다.

나. 그런데 위 D은 2020. 6. 10.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(갑 제2호증의 1 채권양도통지서, 갑 제2호증의 2 채권양도계약서).

원고들은 D가 E에게 어떤 경위로 E에 대한 매매대금의 잔금 1억5,000만원을 양도하였는지 알 수 없지만, 원고들이 추측하기에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의 채권양도로 보입니다.

다. 채무조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,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(대법원 2014.01.16. 선고 2012다110521 판결 등).

라. D는 E에 대한 위 매매대금의 잔금 1억5,000만원의 채권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는바, D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, 실령 피고가 위 D에 대한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.

4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

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,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위 D에게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E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.

5. 결어

이에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렀습니다.

